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」는 「지방자치법」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법령과 도매시장 현황에 맞지 않는 용어, 사문화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정관 변경과 주주 및 임원 변경 신고기간,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서울시 소재 도매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축산부류 거래방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 및 도매시장 현황에 맞지 않는 용어,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